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보고

1. 심 사 경 위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7. 5. 28 화순군수
- 나. 회 부 일 자 : '97. 5. 28
- 다. 상 정 일 자 : '97. 6. 24 (제55회 임시회 제2차 총무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 안 설 명 자 : 농촌지도소장 정 도 현

나. 제 정 사 유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 및 5항이 개정되고 자치 12200-167('97. 1. 1)호로 시달된 '97 지방조직관리 지침(내무부)에 의거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운영조례로 제정하기 위함.

다. 주요내용

-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에 따른 조례 제정으로 법령근거 마련
- 제1조(설치) 지역의 농업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농촌지도소(이하 "지도소"라 한다)를 둔다.
- 제2조(업무)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 3. 농촌생활 개선 사업
 - 4. 농업경영 개선 지도
 -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 기술지도
 - 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 개발
 - 7. 농민교육 및 지도
 - 8.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민병항)

○ 동 조례 제정안은 제정사유와 같이 '97. 1. 1일자로 농촌지도직이 지방 농촌지도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4항 및 5항이 개정되고 내무부에서 시달된 '97 지방 조직 관리지침에 의거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조례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

5. 토론 요지

" 생 략 "

6. 심사 결과

「원안가결」

7. 첨부 :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1부. 끝.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97-59
----------	-------

제출년월일 : 1997. 5. 28

제출자 : 화순군수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1조 제4항 및 제5항이 개정 (대통령령 15267호 '97. 2. 4) 되고
- 자치 12200-167 ('97. 1. 28)호로 시달된 '97 지방조직관리지침 (내무부)에 의거 지역 농업발전과 주민소득 향상을 위하여 화순군 농촌지도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기 위함임.

2. 주요골자

- 지도소의 업무 (안 제2조)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 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 지도
 3. 농촌 생활개선 사업
 4. 농업경영 개선 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 약용작물 재배 기술 지도
 6. 지역 특화 작물에 대한 기술 개발
 7. 농민 교육 및 지도
 8.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감독 한다.
(안 제3조)
- 소장 밑에 두는 하부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4조)
-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안 제5조)

화순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설치)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촉진 등 농촌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농촌지도소 (이하 "지도소"라 한다)을 둔다.

제2조 (업무) 지도소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촌지도사업 종합계획 수립·조정
2. 농민후계자 및 전업농 육성·지도
3. 농촌생활 개선사업
4. 농업경영 개선지도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약용작물 재배 기술 지도
6. 지역 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
7. 농민교육 및 지도
8. 기타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소장) 지도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4조 (하부조직) 지도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장밑에 두는 하부조직 과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